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노식래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610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노식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영희, 김경우, 김기대,  
김기덕, 김정태, 김정환,  
김제리, 김중무, 김태수,  
김평남, 박기열, 박기재,  
박상구, 박순규, 송도호,  
송아량, 양민규, 유 용,  
이광호, 이상훈, 이성배,  
이영실, 이정인, 이태성,  
임종국, 장상기, 장인홍,  
전석기, 정진철, 홍성룡,  
황규복, 황인구 의원(32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비율 등 시·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1조의6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은 법 제101조의6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임. 다만,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 가능함(안 제30조제4항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법 제101조의6 제2항에 따른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법 제101조의6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. 다만, 사업성이 저하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| 개<br>정<br>안   |
|--|---|
| <p>제30조(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)</p> <p>① 법 제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“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.</p> <p>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인수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에서 정할 수 있다.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 | <p>제30조(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법 제101조의6 제2항에 따른 “<u>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</u>”은 법 제101조의6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. 다만, 사업성이 저하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.</p> |

문서번호

2021080500000022

## 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노식래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이원상 팀장  
박주용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08.05

회신일 : 2021.08.06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#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비용발생 요인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0조제3항 신설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의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대주택을 매입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- 안 제30조제3항 신설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의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대주택을 매입함에 따라 향후 매입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재 공공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도 미확정 상태로 매입규모 및 매입시기, 매입가격을 파악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원상

예산분석관 박주용

☎ 02-2180-7954
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